

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민병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61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4월 03일

발 의 자: 민병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철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유만희, 이성배,
이은림, 이효진, 허 · 훈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내용에 관해 제5조제2항제8호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확장 가능성이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골목길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주체를 시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골목길재생 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확대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함(안 제5조제2항제8호).
- 나. 골목길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주체를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확대함(안 제7조제3항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8호 중 “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”을 “그 밖에 골목길재생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시장”을 “시장 또는 구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	제5조(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기본방침과 부합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	8. <u>그 밖에 골목길재생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 -----</u>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골목길주민협의체) ① · ② (생 략)	제7조(골목길주민협의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시장</u> 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	③ <u>시장 또는 구청장</u> -----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골목길재생 실행 계획의 수립)제2항제8호 조문 “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”을 “그 밖에 골목길재생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”으로 개정하여 해석상 포괄적 규정을 구체화하는 조문 정비이며,
- 제7조(골목길주민협의체)제3항 “시장”을 “시장 또는 구청장”으로 개정하여 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주체를 확대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,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

☎ 02-2180-7955

e-mail : kimkmi080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